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23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주철현
황명선 · 이상식 · 임미애
한민수 · 전종덕 · 김준혁
이수진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축질병 관리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방역관리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

의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종류, 대상 축종 및 질병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갱신·사후관리 및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인증의 종류 및 대상 질병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우수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현장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 컨설팅 및 방역관리 물품 등의 지원 근거와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벌칙,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 제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방역우수농장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제46조제1항제3호, 제57조제3호의4·제3호의5,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5호의11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축질병관리 방역우수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가축질병 방역관리 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이하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는 농장 단위로 제18조의4에 따른 방역우수농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8조의3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의2,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방역우수농장 인

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또는 병원체 검사·확인 등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장, 출하 관련 서류,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등에 방역우수농장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농장에 대하여 방역우수농장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대상 축종, 종류, 신청절차, 평가방

법, 인증서 발급, 인증·갱신 기간 및 절차, 표시방법,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업(轉業), 폐업, 농장 운영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방역우수농장 인증 대상 농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의 검사 결과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종류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 또는 표시·광고 제한을 위반한 경우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 효력정지, 시정명령의 기준·절차·방법, 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인증의 재신청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이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갱신·변경신고 절차,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 과

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역우수농장 인증 신청·평가·사후관리에 관한 자료의 보관,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의 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를 하는 경우
3.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4.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지원·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컨설팅, 방역관리 물품 지원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기관, 방역우수농장 인증 신청인 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의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기관의 사무소,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한 농장 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점검·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 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일·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제57조에 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우수농장인증을 받은 자

3의5. 제1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역우수농장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8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
2. 제18조의4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60조제2항제5호의11을 제5호의1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11. 제18조의6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자료 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가축질병관리 방역우수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가축질병 방역관리 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이하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는 농장 단위로 제18조의4에 따른 방역우수농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u> <u>1. 제18조의3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2. 제55조의2,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u>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또는 병원체 검사·확인 등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장, 출하 관련 서류,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등에 방역우수농장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농장에 대하여 방역우수농장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대상 축종, 종류, 신청절차, 평가방법, 인증서 발급, 인증·갱신 기간 및 절차, 표시방법,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업(轉業), 폐업, 농장 운영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방역우수농장 인증 대상 농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의 검사 결과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종류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을 지

키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 또는 표시·광고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 효력정지, 시정명령의 기준·절차·방법, 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인증의 재신청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인증기관의 지정 등)

<신 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
우수농장 인증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하여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
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이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
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
정을 갱신하여야 하며, 지정받
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 갱신 · 변경신고 절차,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신 설>

① 인증기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역우수농장 인증 신청·평가·사후관리에 관한 자료의 보관,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의 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를 하는 경우
3.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신 설>

되는 경우

4.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
우

5.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
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업
무정지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방역우수농장 인증의
지원·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방역우수농장 인증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홍
보, 컨설팅, 방역관리 물품 지원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
우수농장 인증 업무의 관리·감
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인증기관, 방역우수농
장 인증 신청인 또는 방역우수
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의 가축

의 소유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
원에게 인증기관의 사무소, 방
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한 농장
또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
비,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점검
·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
고·자료 제출·점검 또는 조사
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
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점검 또는 조
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
며, 성명·출입일·출입목적 등
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4. (생략) ②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3. (생략) <u><신설></u> <u><신설></u>	<u>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46조(수수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역 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u>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우수농장인증을 받은 자</u> <u>3의5. 제1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역우수농장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를 한 자</u>
---	--

4. ~ 9. (생 략)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 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1. ~ 5의10. (생 략)

<신 설>

4. ~ 9.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

2. 제18조의4에 따라 방역우수 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의10. (현행과 같음)

5의11. 제18조의6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자료 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

<u>5의11.</u> (생 략) 6. (생 략) ③ · ④ (생 략)	<u>유 없이 거부 · 방해하거나 기 피한 자</u> <u>5의12.</u> (현행 제5호의11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